



「2024년 시험대비」 교육학 모의고사 및 해설(5)

| 오현준 교수 | 박문각 공무원 노량진학원



QR코드를 통해
"정통교육학
오현준교수의
강의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허즈버그(Herzberg)가 제시한 동기-위생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불만족을 주는 직무 요인의 반대는 만족을 주는 직무 요인이다.
- ㄴ. 불만족 요인은 매슬로우(Maslow)의 하위 욕구에 해당하며, 임금(보수), 일 자체, 대인관계, 회사정책, 직업의 안정성 등이 해당한다.
- ㄷ. 새로운 학습기회 제공, 재량권 지원,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 전략을 통해 만족요인을 증가시켜야 한다.
- ㄹ. 만족 요인의 충족을 위해서는 불만족 요인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ㄹ
- ③ ㄷ, ㄹ ④ ㄱ, ㄷ, ㄹ

출제영역 : 교육행정학 난이도 : 하
[해설] 정 답 : ③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에 따르면 직무만족에 기여하는 요인(동기요인)과 직무불만족에 기여하는 요인(위생요인)은 별개로 존재한다. 만족요인은 접근요인(approach needs)과 관련이 있으며, 불만족요인은 회피요인(avoidance needs)과 관련이 있다.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은 서로 반대개념은 아니며, 독립된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불만족의 반대개념은 불만족이 없는 것이며, 만족의 반대 개념은 만족이 없는 것이다(ㄱ). 또한 허즈버그(Herzberg)는 동기요인의 충족을 위해서는 위생요인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동기요인은 위생요인이 제거된 다음에야 작용하며, 위생요인의 제거나 개선은 불만족을 감소시키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만족이나 동기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ㄴ에서 일 자체는 만족요인에 해당한다.

[Tip] |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

동기요인 (만족요인, 개인 내적 요인, 접근요인)	위생요인 (불만족요인, 개인 외적 요인, 회피요인)
1. 만족요인 • 동기요인 충족 ○ → 만족감 증대 • 동기요인 충족 × → 만족감 감소	1. 불만족요인 • 위생요인 충족 ○ → 불만족 감소 ○, 만족감 증대 ×
2. 일(직무) 자체를 의미: 성장(발전 가능성), 책임감, 인정, 성취감, 자아실현, 승진, 지위 상승욕구	2. 일을 둘러싼 환경을 의미: 봉급(보수), 작업조건, 안전, 감독, 회사정책, 직무안정성
3. 직무확장(풍부화)을 통해 동기 부여	3. 1차적(우선적) 제거요인

18. 현행 학교운영위원회(2021.9.24. 개정/2022.3.25.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국·공립은 심의기구이며, 사립은 자문기구이다.
-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④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제영역 : 교육행정학 난이도 : 중
[해설] 정 답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원이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의사결정기구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 중의 하나로 발표되어 1996년 국·공립 및 특수학교(초·중·고)에, 2000년 사립학교

(초·중·고)에 설치가 의무화된 필수적 법정기구이다.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된다. 그 성격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①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 ②는 제32조 3항, ④는 제31조 3항에 해당한다.

[Tip ②]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 또는 자문사항)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사항임.

1. 학교 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사립학교는 자문)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4의2. 교복·체육복·출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단, 사립학교는 제외)
- 6의2.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단, 사립학교는 제외)
- ① 학교장 공모: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 중 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를 대상,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 이하
- ② 교사 초빙: 학교장 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지정한 학교,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범위 이내로 초빙
7. 학교운영 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9. 본질주의(essentialism) 교육원리의 핵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생들은 세계의 영원성에 익숙하게 하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워야 한다.
- ②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③ 인류의 문화전수가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 ④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히 이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출제영역 : 교육철학 난이도 : 하
[해설] 정 답 : ①

본질주의는 진보주의의 폐단을 비판(약)하고 그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사상이다. “진보주의는 전통적 교육의 장점인 인류의 문화유산의 전달을 무시하고 아동의 흥미와 자유, 욕구를 지나치게 존중함으로써 학력 저하, 교사의 권위 약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침략을 막아내는 민주국가의 수호적(守護的) 역할을 담당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탄생시킨 근원적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①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理性)에 두고 그 훈련을 위해 절대적 진리가 담긴 교양교육을 중시하는 향존주의의 교육원리에 해당한다.

[Tip] | 본질주의 교육원리

- ① 인류의 문화전수가 교육의 주된 목적이다: “학교는 인류의 문화유산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essential) 것을 가르쳐야 한다.”
- ② 교육의 주도권은 아동이 아니라 성숙된 교사에게 있다: 교사의 권위 회복 → 아동의 자발성은 인정
- ③ 학습은 싫어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련과 도야가 필요하다: 아동의 흥미보다 노력과 훈련·탐구 중시, 학교의 전통적인 학문적 훈련 방식(계통학습) 강조
- ④ 교육과정의 핵심은 소정의 교과를 철저히 이수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 ⑤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관심을 중심으로 행해져야 한다.

20.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 ②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모에 따른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 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출제영역 : 교육행정학 난이도 : 중
[해설] 정 답 : ②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②는 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은 제10조(임용의 원칙) 제1항, ③은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제3항, ④는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2항에 해당한다.

[Tip] | 교육공무원 채용의 제한 및 결격 사유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기간제교원을 포함),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유아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